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430호
2. 발 의 자 : 김 수 규 의원
3. 발의일자 : 2020. 4. 3.
4. 회부일자 : 2020. 4. 8.

II. 제안이유

-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학생에 대한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의 실시 및 인터넷중독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III. 주요내용

1. “학생”,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의 뜻을 정함 (안 제2조)
2.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관련 정책 수립·시행 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3.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4.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5. 교육지원청과 각 급 학교에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담당 인력 지정 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6.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기 점검과 교육, 홍보 등의 예방활동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7.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8조)
8.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9.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을 위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 및 관련 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
10.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
11.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2조)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3. 기 타 : 해당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0년 4월 3일 김수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30호로 발의되어 2020년 4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학생에 대한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의 실시 및 인터넷중독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0호에 따르면 ‘인터넷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중독이라는 용어 대신 ‘과의존’이란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진단척도를 개발하여 국가차원에서 인터넷중독 관련 실태조사¹⁾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²⁾ 전체 조사대상자 중 스마트폰(인터넷)과의존위험군이 20.0%(고위험군: 3.8%, 잠재적위험군: 17.1%)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유아동(만 3~9세)의과의존위험군이 22.9%, 청소년(만

1)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02년부터 ‘인터넷중독 실태조사’를 시작했으며 2006년에 ‘인터넷과의존 실태조사’로 명칭을 변경, 2018년에는 ‘스마트폰(인터넷)과의존 실태조사’로 명칭 변경하여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2019 스마트폰(인터넷)과의존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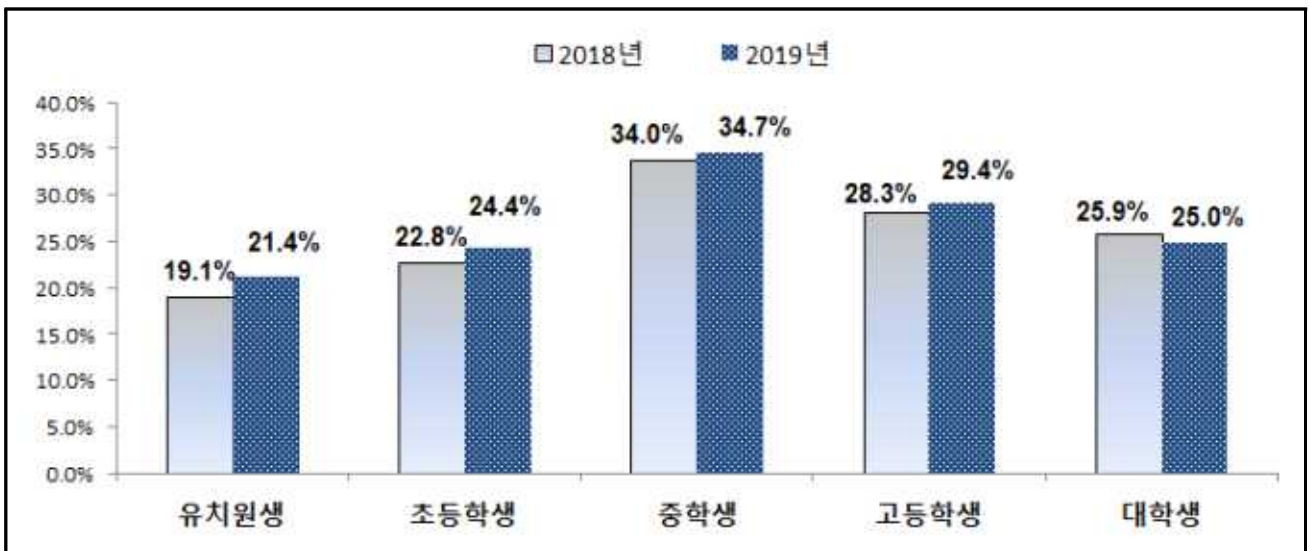
10세~19세)의 과의존위험군이 30.2%로 성인(만 20~59세)의 과의존위험군(18.8%)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1] 2019년 연령대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위험군

연령대별	과의존위험군	
	고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전체	20.0%	17.1%
유아동(만 3~9세)	2.3%	20.6%
청소년(만 10~19세)	3.8%	26.4%
성인(만 20~59세)	2.8%	16.0%

특히, 학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중학생(34.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18년 대비 유치원생(2.3%p)과 초등학생(1.6%p)의 상승폭이 높게 나타나는데, 인터넷중독의 저연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림-1] 2018~2019년 학령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위험군



- 이러한 인터넷중독 저연령화 추세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09년부터 매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 치료를 위해 7개 센터³⁾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인터넷중독 관련 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진단조사와 서울시에서 위탁·운영하는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상황으로, 서울시교육청의 독자적인 정책 사업은 개발·추진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표 2]참조).

[표-2] 서울시교육청 인터넷중독 관련 사업 추진 기관 및 역할

사업	기관명	역할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조사	여성가족부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실시
	서울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	• 교육지원청별 진단조사 학교담당자 교육
	서울시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	• 교육지원청별 진단조사 학교담당자 교육
	서울시교육청	• 교육지원청별 진단조사 연수진행 강사수당 및 연수교재 인쇄비 지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 및 치료지원	서울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	• 전수조사(1차) 결과 분석 및 2차 검사 실시, 통보 • 사후지원 대상자 명단관리 및 지원서비스 총괄 • 전수조사 대상 학교방문 치료서비스 지원 1) 개인상담 2) 집단상담 3) 해석상담 4) 종합심리검사 5) 병원치료지원
	서울시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	• 전수조사 대상 학교 방문 치유서비스 진행 1) 개인상담 2) 집단상담 3) 해석상담 4) 종합심리검사 5) 병원치료지원 • 치유평화 프로그램 진행 1) 치유캠프(11박 12일/여자 중고생/강서센터) 2) 가족치유캠프(2박3일 /초등 /보라매,강북,창동)
	학교	• 학교담당자(정보윤리교사)는 진단조사 후 주의군 및 위험군 학생들이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및 서울시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에서 상담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 배치 학교는 학교 자체 실시 가능함 •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교육 실시 : 치유서비스 기관에 교육 신청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정보통신윤리교육	서울시립 청소년미디어센터	• 서울시교육청이 위탁하여 학부모 대상 특강 진행
	서울시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	• 서울시교육청이 위탁하여 학부모 대상 특강 진행

-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을 AI 교육 원년으로 정하면서 정규교육과정

3) 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에서 AI관련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4)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 학생들의 첨단기기 활용에 의한 인터넷 이용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문제를 국가 및 지자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유·초·중등 학생들의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에 동 조례안은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 1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규정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칙규정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에서 인터넷중독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안 제6조에서 담당인력 지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학교에서의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시책 추진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는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등의 자문을, 안 제9조는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설치·운영을, 안 제10조는 서울특별시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연합뉴스(2020.1.2.). '서울교육청 AI교육 원년... 5년간 전문교사 1천명 양성'.

또한 안 제11조는 거점학교의 지정·운영을, 안 제12조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기본계획의 수립 검토(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계획의 내용에 ‘추진방향’,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담당 인력 지정 및 연수 방안’,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5)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1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안)(2019~2021)’이 마련되었는데, 이 종합계획에서 향후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방안은 인터넷 이용의 역기능을 방지하는 차원을 넘어 “교육”을 통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디지털·데이터 사용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표-3] 참조).

5) 제30조(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3] 국가차원의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주요 정책

전략	내용
<p>전략 1 [역기능 방지에서 역량 강화로의 적극적 예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유아 및 고령층 등 新 과의존 위험군 증가층 대상 정책 강화 • 기술 및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예방교육 재설계 • 수용자 중심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p>전략 2 [예방, 회복, 성장으로 이어지는 역기능 대응 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의존 예방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 코칭 프로그램 개발·확산 • 스마트폰 과의존 및 관련 역기능 치유·치료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 지역별/기관별 상담 사례 분석·공유를 통한 상담 서비스 질적 제고
<p>전략 3 [가정, 학교, 사회의 지원 환경 기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고등학교의 자체 예방능력 강화를 위한 시범·중점학교 운영 • 보호자 코칭 교육 및 학부모 참여 프로그램 기회 확대
<p>전략 4 [국민 중심 정책 추진을 위한 지식·정보 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중심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정책 기회 참여 확대 • 국제 협력 및 정책 전문가 의견 수렴 기능 강화 • 생애주기별·채널별 소통 전략 다각화

특히, 종합계획에는 가정, 학교 등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바른 사용에 대한 교육, 이러한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역량 강화, 중독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국가의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정책을 기반으로 2014년부터 정보통신윤리계획의 일환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계획을 살펴보면, 주요 사업 내용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인터넷중독 진단조사 시행을 지원하거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인터넷 예방교육 및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알려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2020년도 관련 예산은 2019년(82,580천원) 대비 40,000천원 감액된 상황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인터넷중독관련 사업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표-4] 참조).

[표-4] 서울시교육청 2020년 인터넷중독관련 사업 및 예산

사업명	예산액	세부 주요내역
정보통신윤기교육지원	40,54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조사 연수진행 행사용품비(11개청) • 전수조사 연수교재 인쇄비(11개청) • 외부위탁비용(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연수) • 인터넷중독예방전수조사 업무추진비(11청)

○ 따라서 동 조례안 제4조는 ‘교육’을 강조하는 국가의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정책을 반영하여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인터넷중독 관련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3)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검토(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센터에서는 ‘인터넷중독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인터넷중독 학생의 상담 및 치료는 매년 3~4월에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 결과’에 따라 주의·위험 사용자군에 한하여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및 서울시인터넷중독상담센터(6개)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위험사용자군 학생의 경우 부모 동의가 없으면 상담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는바, 인터넷·스마트폰 주의·위험자군 중에서 공존질환검사를 받은 비율은 2017년에 10.6%, 2018년에 10.5%에 불과하고 사후관리를 받은 학생 비율 또한 2017년 2.2%, 2018년 2.1%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표-5] 참조).

[표-5] 2017~2018년6) 인터넷·스마트폰 주의·위험 사용자군 사후관리 현황

연도	진단검사 실시 학생 수(A)		진단검사 결과					
			인터넷사용자군		스마트폰사용자군		공존질환검사 시행 학생수(%)	사후관리 학생수 및 비율(%)
			주의사 용자군	위험사 용자군	주의사 용자 군	위험사 용자 군		
2017 년	초4	75,180	5,585	780	3,690	715	1,495(13.9%)	342(3.2%)
	중1	73,482	9,001	913	7,784	1,190	2,103(11.1%)	533(2.8%)
	고1	84,275	7,285	530	10,003	1,032	1,562(8.3%)	196(1.0%)
	합 계	232,937	21,871	2,223	21,477	2,937	5,160(10.6%)	1071(2.2%)
2018 년	초4	70,608	6,117	865	3,852	669	1,534(13.3%)	328(2.9%)
	중1	65,730	9,060	837	6,388	900	1,737(10.1%)	429(2.5%)
	고1	74,734	7,906	627	8,549	1,019	1,646(9.1%)	205(1.1%)
	합 계	211,072	23,083	2,329	18,789	2,588	4,917(10.5%)	962(2.1%)

○ 이에 현재 주의·위험사용자군임에도 불구하고 공존질환검사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약 90%의 주의·위험군 학생들은 전문기관의 상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개별 학교차원에서 사후관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별 학교에서도 현재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으므로⁷⁾ 주의·위험군 학생들의 상대수가 실질적인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국가정보화 제30조의8⁸⁾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은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19년에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및 서울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6개)에서 인터넷중독관련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6) 2019년부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별 결과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7) 2020년 초·중·고등학교 총 1,324개교 중, 전문상담인력(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 배치인원은 848명으로, 약 64.0%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임.

8)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수(422,293명) 대비 11.3%, 중학교는 전체 학생수(207,413명) 대비 54.8%,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 수(236,680명) 대비 37.2%만이 예방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표-6] 2019년 학교급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실시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생수	예방교육 실시 학생수(%)	전체 학생수	예방교육 실시 학생수(%)	전체 학생수	예방교육 실시 학생수(%)
422,293	47,746(11.3%)	207,413	113,701(54.8%)	236,680	87,966(37.2%)

- 이와 같이 현재 여성가족부 및 서울시에서 학생들의 인터넷중독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방교육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추진하는 기관은 부재한 상황이며, 본청에서도 과학·영재·정보화교육 팀의 장학사 1명이 인터넷중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 제9조는 서울시교육청에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함으로써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인터넷중독 사후관리 및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5146, 2020.4.10.).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인터넷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제30조(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 계획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과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인터넷중독 관련 계획 수립의 협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 또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6(인터넷중독대응센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2.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7(인터넷중독 관련 전문인력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연 1회 이상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연 1회 이상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반기별 1회 이상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연 1회 이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 실시 결과의 제출, 제3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